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청 소 년 복 지 지 원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영애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이 개정('21.4.20. 공포, '22.4.21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생리용품 지원대상 기준 근거마련 (안 제3조의2)

나. ‘보건위생물품’을 ‘생리용품’으로 용어 변경(안 제3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중위소득 및 연령 기준 단계적 확대에 따른 예산필요

다. 합 의 : 기재부 등과 합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”을 “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”로 한다

제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.

제3조의2 중 “보건위생물품”을 “생리용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의2 (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<u>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</u> 해당하는 여성청소년(이하 “지원대상 여성청소년”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(이하 “ <u>보건위생물품</u> ”이라 한다)을 지원한다.	제3조의2 (<u>생리용품</u> ---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“ <u>생리용품</u> ”----- ----- -.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	1~3. (현행과 같음)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	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	
4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<u>보건위생물품</u>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4. ----- <u>생리용품</u> ----- -----

<신 설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[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]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

③ -----
----- 생리용품-----
- 생리용품-----
--생리용품-----

④ -----
----- 생리용품 -----

④ 제2항에 따라 <u>보건위생물품</u> 또는 <u>보건위생물품</u>의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	⑤ ----- <u>생리용품</u> -----<u>생리용품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232